

| | |
|-----------|----------------|
| 의안번호 | 제 314 호 |
| 의결 연월일 | . . . (제 회)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이종갑 의원 등 8인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14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종갑,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양섭, 이의영, 임병운, 최정훈

1. 제안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의 전부개정
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
진 등 충청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등록대상동물 등록, 관리 등(안 제8조 ~ 제12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안 제13조 ~ 안 제15조)
- 수수료(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6.
- 협 의 : 충청북도 농정국 축수산과
- 비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
- ④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관리, 학대 방지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
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시장·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 제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한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및 등록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

제10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으로써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장소
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장소

제12조(동물의 보호·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 대상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의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4항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증·분양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거나 동물 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자

② 도지사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기증·분양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분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법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또는 입양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6.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7. 세 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세 번째 등록부터 적용한다): 100분의 50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반환 또는 인수 등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여건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4) 격리실은 보호 중인 동물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3조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 다. 동물종류, 품종, 나이 및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하며,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구조 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않은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한다.
- 다. 보호동물의 등록을 확인하고, 보호동물이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라. 보호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또는 해당 보호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해야 하고, 보호동물을 다시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바. 제28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참관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별표 3]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 동물명 | 규격 |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
|--------|---------|--------------------------|
| 개, 고양이 | 6개월령 이하 |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
| | 6개월령 초과 |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
| 기타 | -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은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13.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3. 제59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갱신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 생명 존중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문화 조성에 이바지

2. 비용발생 요인

- 동물복지정책 지원 및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조례안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 및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 내용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안 제5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수당, 안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실·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수당 : 1,200천원
 - (신규) 위원회 운영 수당 : 2회 × 100천원 × 6명 = 1,200천원
- 동물보호센터 운영 : 450,000천원
 - (기존) 유기·유실동물 등 보호비 지원 : 4,500두 × 100천원 = 450,000천원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 1,480,000천원
 - (기존)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 1식 × 1,480,000천원 = 1,480,000천원
- 유기동물 입양비용지원 : 185,750천원
 - (기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743두 × 250천원 = 185,750천원
-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 105,350천원
 - (기존)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 1,505두 × 70천원 = 105,3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